

제 13 장 금융서비스

제 13.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 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11장(투자) 및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은 그 장들 또는 그 장들의 조항들이 이 장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기술된 조치에 적용된다.
 - 가. 제11.6조(수용 및 보상) · 제11.7조(송금) · 제11.10조(투자자와 환경) · 제11.11조(혜택의 부인) · 제11.13조(특별형식 및 정보요건) 및 제12.11조(혜택의 부인)는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나. 제11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은 이 장에 통합된 제11.6조 · 제11.7조 · 제11.11조 또는 제11.13조를 당사국이 위반하였다는 청구에 대하여만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 다. 제12.10조(지불 및 송금)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3.5조에 따른 의무의 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또는
 - 나. 자국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사국의 금융재원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활동이나 서비스
-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기관에게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활동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경쟁하여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경우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3.2 조 내국민 대우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기관 및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3.5조제1항의 내국민 대우 의무의 목적상, 당사국은 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3.3 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3.4 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그러한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기초하여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다음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

- 1)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금융기관의 수
- 2)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금융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영업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¹⁾, 또는
- 4)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요건의 형태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금융기관이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나. 금융기관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것

제 13.5 조 국경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부속서 13-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용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의무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영업 또는 구매권유 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1) 3목은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국은 이 의무의 목적상 “영업” 및 “구매권유”를 정의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정의는 제1항과 불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당사국은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그 밖의 건전성 규제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6 조 신금융서비스²⁾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동종의 상황에서 자국의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13.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형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기관에게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 13.7 조 일정 정보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가.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 나. 공개되면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

2) 제13.6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 당사국은 양해한다. 그러한 신청은 그 신청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6조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 13.8 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1.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의 핵심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2.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을 자국의 국민, 자국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양자의 결합으로 구성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 13.9 조
비합치 조치

1. 제13.2조 내지 제13.5조와 제13.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 2)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 3) 지방정부³⁾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연장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3.2조 · 제13.3조 · 제13.4조 또는 제13.8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⁴⁾

2. 제13.2조 내지 제13.5조와 제13.8조는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2절에 당사국이 규정한 분야 ·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3.5조는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3.5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한도에서만 그 개정에 적용된다.

3. 제11.3조(내국민 대우)·제11.4조(최혜국 대우)·제12.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2.3조(최혜국 대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의 당사국 유보목록의 유보항목에 규정된 비합치 조치는, 그 유보항목에 규정된 조치·분야·하위분야 또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한도에서, 각 경우에 맞게, 제13.2조나 제13.3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제 13.10 조 예 의

1. 이 장의 다른 규정 또는 제11장(투자), 특히 제14.23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4장(통신),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적용범위)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예금자·보험계약자 또는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이 되는 인의 보호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⁵⁾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상의 규정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규정상의 당사국의 약속 또는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이 장 또는 제11장(투자), 특히 제14.23조(다른 장과의 관계)를 포함한 제14장(통신), 또는 제15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대상 투자에 의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12.1조(적용범위) 제3항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취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은 제11장이 적용되는 조치에 대한 제11.8조(이행요건)상의 당사국의 의무, 또는 제11.7조(송금)나 제12.10조(지불 및 송금)상의 당사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건전성 사유”란 개별 금융기관이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 책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11.7조(송금) 및 제12.10조(지불 및 송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건전성·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그 계열사 또는 그 기관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하도록 허용하는 이 협정의 어떠한 다른 규정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기만적이고 사기적인 관행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동종의 여건하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나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 13.11 조

투 명 성

1. 양 당사국은 금융기관과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을 규율하는 투명한 규정과 정책이 외국의 금융기관과 외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대한 접근과 상대국 시장에서의 영업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인정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3. 제21.1조(공표) 제2항 내지 제4항을 대신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채택하고자 제안하는 이 장의 대상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

되는 규정과 그 규정의 목적을 사전에 공표한다.

나. 그러한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⁶⁾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⁷⁾ 그리고

다. 자국이 최종 규정을 채택하는 시점에 그 제안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의견을 서면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4.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최종 규정의 공표와 그 발효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규제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7. 각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신청을 완료하기 위한 요건을 공개한다.

8.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그 신청의 처리상황을 신청자에게 알린다. 당국이 신청자에게 추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9. 당사국의 규제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신청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신청은 모든 관련 심리가 개최되고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가호에 기술된 대로 사전에 규정을 공표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그들의 의견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 전자주소이든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공한다.

7) 나호에 더하여, 금융감독원은 시행세칙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자신의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의견을 제시하는 기간을 최소한 대한민국의 행정절차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된 규정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만큼 부여하는 현행 관행을 지속한다.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되기 전에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규제당국은 과도한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거부한 규제당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신청거부사유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제 13.12 조 **자율규제기구⁸⁾**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구의 회원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자율규제기구가 제13.2조 및 제13.3조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 13.13 조 **지급 및 청산 제도**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급 및 청산 제도와 일상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조는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 13.14 조 **인 정**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구는 그 기구에 대한 회원자격이나 참가 또는 접근이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한도에서 제13.12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1.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한 인정은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규제, 감독, 규제의 이행, 그리고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간의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인정을 부여하고 제2항에 기술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약정에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 13.15 조

구체적 약속

부속서 13-나는 각 당사국에 의한 일정한 구체적 약속을 규정한다.

제 13.16 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위원회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부속서 13-다에 규정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 당국의 공무원이 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관련 문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다. 제13.19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한다.

3.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정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 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대로 회합한다. 위원회는 각 회의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제 13.17 조

협 의

1.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양 당사국은 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13-다에 명시된 당국의 공무원이 포함된다.

제 13.18 조

분쟁해결

1. 제22장(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의 제2절(분쟁해결절차)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되어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2.9조(패널의 설치)가 적용된다.

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경우

1) 각 당사국은 제3항 또는 제22.9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제13.10조를 원용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3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 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이나 관행에 관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진다.
- 나. 객관성·신뢰성 그리고 건전한 판단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선정된다.
- 다.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분쟁 당사국과 연계되거나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 라.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제정될 행동규범을 준수한다.

4. 제22.13조(불이행)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 중인 그 조치가

-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만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 다. 금융서비스 분야 이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혜택을 중지할 수 없다.

제 13.19 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1장(투자)의 제2절(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고 피청구국이 항변으로 제13.10조를 원용하는 경우,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 가. 제11장의 제2절에 따라 중재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피청구국은 제13.10조가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한 공동 결정 요청서를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한다. 피청구국은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그 중재판정부에 그러한 요청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중재는 그 청구에 대하여 라호에 규정된 대로만 진행될 수 있다.

나. 위원회는 가호에 기술된 대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의로 노력한다. 모든 그러한 결정은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중재판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된다. 그 결정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다. 위원회가 가호에 따른 결정에 대한 피청구국의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호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위원회가 미해결로 남겨둔 문제를 결정한다. 이 호에 의하여 수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1장의 제2절이 적용된다.

- 1) 아직 중재판정부에 임명되지 아니한 모든 중재인의 임명에 있어, 각 분쟁 당사자는 그 중재판정부가 제13.18조제3항가호에 기술된 전문성 또는 경력을 가지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정 후보자의 전문성 또는 경력은 의장 중재인의 임명에 있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 고려된다.
- 2) 가호에 따른 결정 요청의 제출 이전에, 의장 중재인이 제11.19조 (중재인의 선정)제3항에 따라 임명되었던 경우, 그러한 중재인은 어느 한 쪽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체되며, 그 중재판정부는 1목에 합치되도록 재구성된다. 라호에 따라 중재절차가 재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당사자가 새로운 의장 중재인의 임명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분쟁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1목에 합치되도록 의장 중재인을 임명한다.
- 3)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13.10조가 청구에 대하여 유효한 항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어느 한도에서 인정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에 구두 및 서면 입장제출을 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이 그러한 입장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의 목적상,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13.10조에 대한 피청구국의 입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청구에 대하여, 가호에 언급된 중재는

- 1) 분쟁 당사자와,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경우 그 중재판정부가, 위원회의 결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후, 또는
- 2) 다호에서 위원회에 주어진 60일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후 진행될 수 있다.

2. 제11.28조(정의)에 규정된 다음 용어의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조에 통합된다 : 청구인 · 분쟁당사자들 · 분쟁당사자 · 피청구국 및 사무총장

제 13.20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국경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이라 함은

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한, 또는

다.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그러나,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이라 함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인이 지배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라 함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관련 서비스, 그리고 모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가. 직접보험(공동보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2) 손해보험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상담·계리·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은행 및 다른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

바. 소비자대출·주택담보대출·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

사. 금융리스

아. 신용·선불·직불 카드·여행자수표 및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

자. 보증 및 약정

차. 거래소 및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

1) 화폐시장 상품(수표·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한다)

2) 외환

3)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양도성 증권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 (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연금기금운용·보관·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

하. 증권,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전략에 대한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 내지 거호에 기재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⁹⁾을 말한다.

투자라 함은 제11.28조(정의)에 정의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채무증서”에 대하여는 다음을 말한다.

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는 그 기관이 소재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규제 자본으로 취급되는 경우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나. 가호에 언급된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이외에,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이외에,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소유하는 채무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채무증서가 제11.28조(정의)에 규정된 투자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11장(투자)의 목적상 투자이다.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이나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중국적자인 자연인은 전적으로 지배적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 본다.

신금융서비스라 함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나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형태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금융감독원이 이 협정상의 대한민국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당사국의 인이라 함은 제14조(정의)에 정의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당사국 기업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말한다. 당사국의 중앙은행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금융규제 기능을 수행하고 당사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모든 금융기관¹⁰⁾은,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지정 독점 또는 공기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율규제기구라 함은 유가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협회를 포함하여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의 법령 또는 위임에 의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정부 기관을 말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지정 독점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0) 대한민국 예금보험공사와 미합중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제16장(경쟁 관련 사안)의 목적상 공공기관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부속서 13-가
국경간 무역

미합중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그리고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대로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2. 제13.5조제1항은 보험서비스에 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나. 중개를 제외한,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대한민국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4.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¹¹⁾· 위험평가¹²⁾· 계리·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13.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인과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보험 중개

5. 제13.5조제1항은 상담· 계리· 위험평가·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제13.20조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6. 제13.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¹³⁾

나.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13.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11) 상담이라 함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12) 위험평가라 함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항가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는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간행물 안에 포함되거나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일반적인 금융 또는 사업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 이 약속은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증권¹⁴⁾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1) 대한민국 내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또는 (2) 대한민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14) 2007년 3월 현재,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행되는 증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화로만 표시된다.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행된 채권이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집합투자기구에 의하여 보유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는 대한민국 영역 내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부속서 13-나
구체적 약속

제 1 절
포트폴리오 운용

미합중국

1. 미합중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다음의 서비스를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하 것을 허용한다.

가. 투자 자문, 그리고

나. 다음을 제외한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

1) 신탁 서비스, 그리고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보관서비스¹⁵⁾ 및 실행 서비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은 제13.1조 및 제13.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3. 제1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1940년 투자회사법에 따라 증권 거래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를 말한다.

대한민국

4. 대한민국은 자국 영역 밖에서 조직된 금융기관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의 관리자에게 투자 자문 및 포트폴리오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그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신탁 서비스

나. 보관 서비스, 그리고

다. 집합투자기구 운용과 관련되지 아니한 실행 서비스

¹⁵⁾ 보관서비스는 주요시장이 미합중국 영역 밖인 투자에 대하여만 제1항에 포함된다.

이 항은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자문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서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대한민국은 일단 원화 표시 자산에 대한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이 서비스의 자유화에 대하여 미합중국과 협의할 것이다.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항은 제13.1조 및 제13.5조제3항을 조건으로 한다.

6. 제4항의 목적상, **집합투자기구**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투자 신탁, 그리고
- 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투자회사

제 2 절 정보의 이전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이 그 기관의 일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처리를 위하여 자국 영역 안과 밖으로 정보를 전자적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한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이 약속에 효력을 부여한다.

제 3 절 기능의 수행

1. 양 당사국은 당사국 영역 내의 금융기관이 그 당사국의 영역 안 또는 밖에 소재한 그 기관의 본점 또는 계열사에서 일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그러한 본점 또는 계열사가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능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확인서 및 내역서 작성을 포함한 매매 및 거래처리 기능
- 나. 데이터처리¹⁶⁾,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개발과 같은 기술 관련 기능
- 다. 조달, 출장 지원, 우편 서비스, 물리적 보안, 사무실 공간 관리 및 비서 서비스를 포함한 행정 서비스
- 라. 훈련 및 교육을 포함한 인력관리 업무
- 마. 은행정산업무, 예산수립, 보수, 세금, 회계조정, 그리고 고객 및 자기 계정을 포함한 회계 기능, 그리고
- 바. 자문 및 소송 전략의 제공을 포함한 법무 기능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에게 일정한 기능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그 본점 또는 계열사가 수행하는 기능에 적용가능한 요건의 준수에 대하여 궁극적인 책임을 진다.

제 4 절 투 명 성

미합중국은 특히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대한 운영지침의 채택 및 비조치의견서 제도의 도입에 주목하면서, 투명성 확대 및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이 진행 중인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금융기관 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행정지도를 내리던 기존의 관행을 지속한다.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은 제공된 모든 구두 행정지도를 서면으로 하고 공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다. 이전에 내려진 행정지도를 재심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이해당사자에게 그 지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6) 당사국이 부속서 13-나 제2절에 따라 자국 영역 밖으로 정보의 이전을 허용할 의무를 지는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또한 이전 후 그 정보의 데이터처리를 허용한다.

제 5 절 보험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

각 당사국은 보험 공급자에 대하여 접수된 민원에 대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자국 제도가 그러한 공급자의 상대적 규모를 공정하게 고려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각 당사국은 모든 민원 정보가 민원지수 비율 형태, 등급 형태, 또는 다른 합리적인 형태와 같은 투명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문서로 잘 정리된 정의와 계산방법의 설명을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보험공급자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 건수 공개시 당국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민원 건수를 또한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제 6 절 분야별 협동조합 판매 보험

1. 분야별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보험서비스에 관한 규제는 그 협동조합에게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당사국은 그러한 협동조합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민간 보험업자가 공급하는 동종서비스에 자국이 적용하는 동일한 규범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는 분야별 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으로,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보험 판매와 관련된 지급능력 사안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대상이 되도록 규정한다.

3. 부속서 13-다에서 설립된 보험작업반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목적 달성을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다룬다.

제 7 절 감독 협력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을 방지·적발 및 고발하기 위한 감독기관의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감독기관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각 당사국의 금융감독기관의 노력을 지지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는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양 당사국은 금융감독기관이 양해각서 또는 특별 약속과 같은 양자간 협의 또는 양자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통하여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제 8 절 정부 조달

1. 제13.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이 장이 제13.1조제3항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활동 또는 서비스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는 한도에서 다음 서비스의 취득 또는 조달에 대하여 제13.2조 및 제13.3조를 적용한다.

가. 중앙정부 채무의 판매·상환 및 배분에 관한 서비스

나. 중앙정부의 국고 및 공탁 계좌의 보유에 관한 서비스, 그리고

다. 다음 자산의 운용에 관한 서비스

1) 미합중국의 경우, 수탁자로서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가 보유하는 연방정부 직원의 자산, 그리고

2)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의 자산

2. 대한민국은 한국투자공사가 제1항다호2목에 기술된 서비스를 국경간 공급방식으로 취득하거나 조달하기로 선택하는 한도에서 그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제13.5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 9 절 보험의 신속한 이용가능성

양 당사국은 허가받은 공급자에 의한 보험서비스의 제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규제 절차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대한민국

1. 미합중국은 상품신고절차에 대하여 예외목록 접근방식¹⁷⁾에 기초한 정책 및 절차를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이내에 채택하기로 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환영한다. 대한민국은 그 상품이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¹⁸⁾을 충족하는 경우 이외에는, 새로운 보험 상품의 도입 전에 사전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이 규정의 제8절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품의 검토기간을 규정한다. 대한민국은 모든 방카슈랑스 상품에 대하여 상품신고를 요구한다.

미합중국

2. 미합중국 헌법상 연방주의 원칙, 미합중국에서 보험에 대한 주 단위 규제의 역사, 그리고 *맥커랜-피저슨법*을 인정하면서, 미합중국은 의향서 제2부에 규정된 신속 시장진출 의사와 규제 개혁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전미 보험감독관협의회의 “의향서 : 보험 규제의 미래”에 표현된 대로 보험서비스의 이용가능성에 관한 전미보험감독관협의회의 노력을 환영한다.

17) 제1항의 목적상 이 문맥에서 예외목록 접근방식의 채택이라 함은 상품신고의 대상이 되는 특정 절차 또는 상품의 목록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록에 있지 아니한 절차 또는 상품은 사전 상품신고를 요하지 아니할 것이다.

18) 제1항에 언급된 기준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이미 보고된 위험율이 사용되는지 또는 예정 이자율 또는 비용에서부터 오직 최소한의 조정만 하는지 여부, 보험료율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국내 통계의 부족으로 재보험사의 보험료율이 사용되는지 여부, 보험이 예정 이자율을 채택하고 자신의 보고된 위험율이 변경 없이 또는 최소한의 변경만을 가하여 사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보험증서 또는 보험 가입 양식이 최소한의 변경으로 수정되고 있는지 여부

부속서 13-다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1.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 그리고

나. 미합중국의 경우,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는 재무부,
그리고 보험에 대하여는 상무부 및 그 밖의 기관과의 조정을 통하여,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제의 구체화

2. 양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또는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 및 지역 정부에 의해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할 것을 기대한다. 위원회 회의의 개최 전에 제1항에 규정된 당국은 당사국이 제기하기로 선택한 금융기관이나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우려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위한 금융서비스 문제의 목록을 상대 당국에게 제공한다.

보험 작업반

3. 양 당사국은 그들의 영역에서 보험의 공급에 관한 문제의 협력·조정 및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그들의 보험감독당국간 논의가 중요함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감독 조직의 관련 공무원들로 구성된 보험 작업반을 설치한다. 작업반은 투명성, 우정사업본부, 보험을 판매하는 분야별 협동조합과 민간 보험업자간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앙 및 지역 정부의 규제를 포함한 금융감독, 정책 변경의 개발·채택 및 검토, 양 당사국의 상이한 감독조직, 그리고 그 밖의 상호 관심 사안을 다룬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작업반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매년 1회 회합하며, 각 당사국이 매년 번갈아 회의장소를 선정한다. 작업반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제13.16조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알린다.

부속서 13-라

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 공급

1.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제는 우정사업본부에게 대한민국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의 민간 서비스 공급자보다 경쟁상의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목적으로, 대한민국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규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러한 서비스가 자국 영역에서 동종 보험서비스를 공급하는 민간 공급자에게 적용가능한 것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실행가능한 한도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서비스에 관한 서한교환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보험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규정한다.